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3
----------	---------

제 출 일 자	2005. 3. 1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재난전담기구 신설과 주택가격평가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명시하기 위함.
- 나.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축소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5급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7급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

- 1)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 822명 → 837명 (1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806명 → 821명 (15명 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현행유지)
- 2) 승인 정원 : 15명(5급1, 6급2, 7급3, 8급5, 9급4)
 - 재난전담기구 인력 : 9명 (5급1, 6급2, 7급1, 8급2, 9급3)
 - 주택가격평가 및 조사인력 : 5명 (7급1, 8급3, 9급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 1명(7급1)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명시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 「시행규칙」 → 「정원조례」 로 조정

다. 한시정원 재규정

1)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 10명 (변동 없음)

○ 직급별 내역

－ 존속기한(2005.6.30 까지) : 5급 1명(주민자치과장) → 상시정원 전환

－ 존속기한 (2006.12.31 까지) : 6명 → 7명 (7급1명 증)

－ 존속기한(2007.6.30 까지) : 3명(현행유지)

○ 분야별 한시정원

－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 : 토목건축 5급1, 토목8급1, 환경8급1, 건축
9급1, 농업9급1, 기능10급1 ('06. 12. 31까지)

－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인력(1명) : 행정7급1 ('06. 12. 31까지)

－ 혁신·분권 전담인력(3명) : 행정6급1, 행정7급1, 행정8급1
('07. 6. 30 까지)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소요경비 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2. 23 ~ 2005. 3. 15)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조중 “지방자치 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본문중 “822명”을 “837명”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중 “806명”을 “821명”으로 한다.

제3조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조례 제47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조례 중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7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37	437	16	132	57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46	346	10	84	39	19	83	65
4급	6	3	1	2				
5급	45	18	2	6	5	1	7	6
6급	167	95	3	19	11	5	28	6
7급	212	111	1	35	10	6	21	28
8급	152	83	3	20	10	4	15	17
9급	64	36		2	3	3	12	8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46	89	6	5	18	3	19	6
6급	5	4			1			
7급	14	12		1	1			
8급	25	19	2		3	1		
9급	55	32	4	4	5	1	9	
10급	47	22			8	1	10	6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22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806명</p> <p>2. (생략)</p>	<p>제2조()</p> <p style="text-align: center;">837명</p> <p>-----.</p> <p>1. ----- : 821명</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p> <p>-----</p> <p>----- 별표와 같다.</p>
<p><신설></p>	<p>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조례 제479호 부칙</p> <p>① (생략)</p> <p>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 한다.</p> <p>2. 6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3. (생략)</p>	<p>조례 제479호 부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삭제></p> <p>1. 7명</p> <p>2.</p> <p>(현행 제3호와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級 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이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제19조(한시정원) ①~⑤ (생략)

⑥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⑦~⑨(생략)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가구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 기 구 : 재난안전관리과 (1개과 신설)

□ 정 원 : 822명 → 837명(15명 증원 : 5급1, 6급2, 7급3, 8급5, 9급4)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지 급 기 준	비 고
총 계		525,785		
인 건 비	소 계	427,287	·직급별 호봉기준 - 5급 : 25호봉 - 6급 : 18호봉 - 7급 : 12호봉 - 8급 : 7호봉 - 9급 : 3호봉	·세부내역 - 붙임참조
	기 본 급	203,713		
	수 당	99,423		
	정액급식비	23,400		
	교통보조비	18,700		
	명절휴가비	25,464		
	가계지원비	42,440		
	연가보상비	14,147		
물건비	기관운영추진비등	36,390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수행활동비	
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등	62,108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